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A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975호

의 안 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의 결 일 2023. 12. 4.

주 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2월 4일

위원장 김홍일

위원 정승윤

위원 김태규

위원 박종민

위원 강길연

위원 최정목

위원 송현주

위원 홍세욱

위원 홍봉주

위원 김태영

위원 최진영

위원 신대희



<별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2023. 12.



국민권익위원회

A O B C

순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4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 지방세 대비 저조	4
2.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법규정 미흡	6
IV. 개선방안	10
1.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관련 규정 마련	10
2. 적용범위 확대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규정 마련	11
3. [정책제안] 지방세외수입 관련 일반법 마련 검토	11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 사례 지속 발생
 -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 현황
(‘20년) 7,728건, 269백만 원 → (‘21년) 6,029건, 252백만 원 → (‘22년) 6,159건, 270백만 원
- 그러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대비 과오납금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우선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 운영
 - 지방세외수입은 부과·징수 위주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환급 등 국민의 권리 보호 관련 법규정이 미비
 - 또, 계좌정보 취득과정에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등 민원 야기 및 국민 불편 초래로 행정신뢰도 저하
 - “보이스피싱인 줄” 통장사본 요구 과태료 환급방식 개선을(‘23.5월, 언론보도)
 - 광주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 3년새 2배 증가... 환급은 주먹구구(‘23.5월, 언론보도)
 -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 업무 부적정 감사 지적(‘21.12월, ○○시 감사 결과)
- 이에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비 미흡한 과오납금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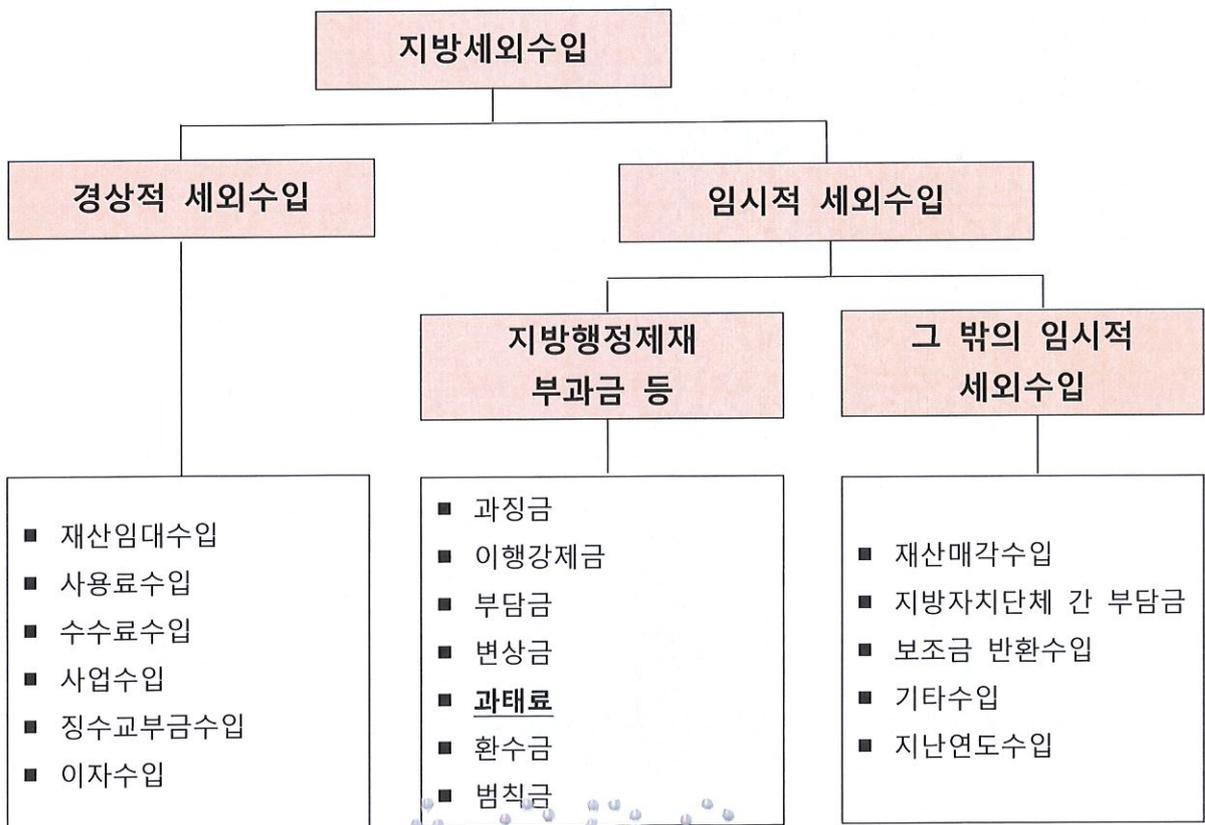
- 실태조사 : ‘23. 8~10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23. 11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3. 12월

Ⅱ. 제도 현황

□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함
 - ※ '21년도 지방세외수입은 33조 9천억원 수준
- (부과·징수)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별도의 일반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
 - ※ 지방회계법은 세입(지방세+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일부 규정
- (체납징수) 개별법령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이라 한다)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그 외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

<지방세외수입의 세입원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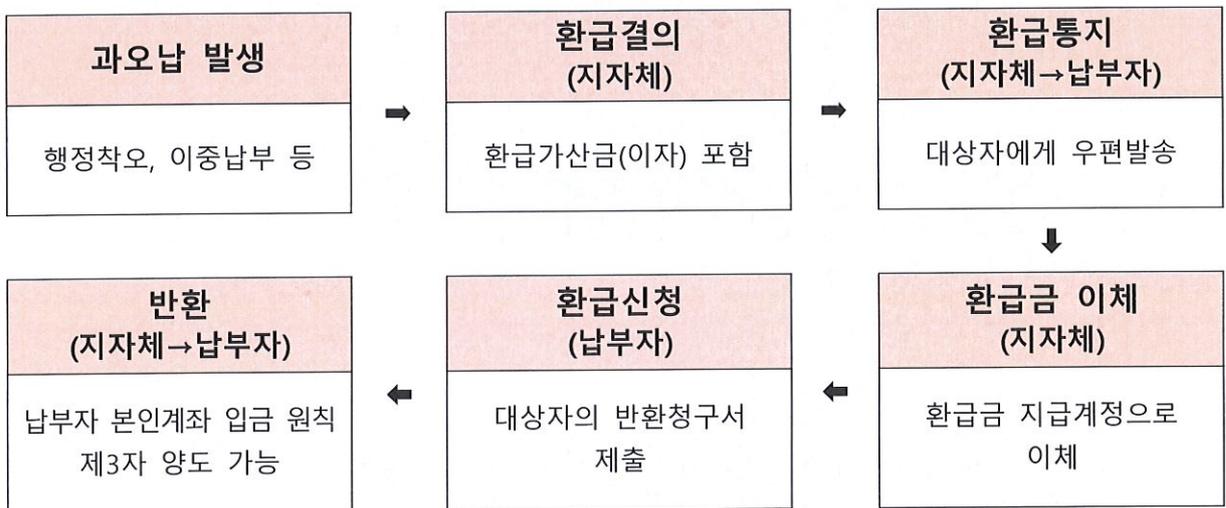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성격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에 해당
 - ※ 도로교통법, 장애인등편의법,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시·군·구청장으로 규정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의 개념

- 과오납금은 과납금과 오납금을 통칭한 것
 - (과납금)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 (오납금)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납부한 금액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절차



(출처 : 2022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해설집(행정안전부 발간) 발췌·정리)

□ 과오납금 환급대상

-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이 원칙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Ⅲ. 문제점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 지방세 대비 저조

- 최근 4년간('20년~'23.7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은 환급금액 기준 80.6%로, 과오납금의 약 20%(약 1억9천만원)가 미환급

* 환급 건수 기준 환급률은 84.0%

※ 과오납 환급률 추이 : ('20년) 89.3% → ('21년) 79.6% → ('22년) 83.0% → ('23.7월) 65.8%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현황('20년~'23.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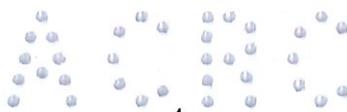
(단위 : 건, 천 원, %)

구분	과오납 현황		과오납 환급 현황		환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기준	금액 기준
계	24,419	978,148	20,523	788,190	84.0	80.6
~'23.7월	4,503	185,073	3,500	121,769	77.7	65.8
'22년	6,159	270,658	5,245	224,513	85.2	83.0
'21년	6,029	252,881	5,015	201,307	83.2	79.6
'20년	7,728	269,535	6,763	240,600	87.5	89.3

('23. 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률*이 96~99%에 이르고 있는 것과 달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은 지방세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

*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률은 '19년 99.99%, '20년 98.67%, '21.1~11월 96.4% 수준 ('22.1.31. 뉴시스)



○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중납부 37.4%, 행정기관 착오 28.0%, 납부자 착오 8.7%로 이중납부 및 착오로 인한 경우가 다수*

* 이중납부 및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전체 24,419건 중 18,083건으로 74.1%

- 특히,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잘못 부과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경우도 다수 발생(28.0%, 6,836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 사유별 환급 현황('20년~'23.7월)]

(단위 : 건, 천 원, %)

구분	과오납 현황		과오납 환급 현황		환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기준	금액 기준
계	24,419	978,148	20,523	788,190	84.0	80.6
	100%	100%	100%	100%		
이중납부 ¹⁾	9,134	378,493	7,701	309,677	84.3	81.8
	37.4%	38.7%	37.5%	39.3%		
행정기관 착오 ²⁾	6,836	273,086	5,713	219,309	83.6	80.3
	28.0%	27.9%	27.8%	27.8%		
납부자 착오 ³⁾	2,113	88,159	1,695	68,183	80.2	77.3
	8.7%	9.0%	8.3%	8.7%		
기타 ⁴⁾	6,336	238,410	5,414	191,022	85.4	80.1
	25.9%	24.4%	26.4%	24.2%		

1) 이중납부 : 납부하였음에도 납부 사실 미인지 등으로 추가 납부한 경우

2) 행정기관 착오 : 행정청이 납부 의무가 없는 자에게 잘못 부과한 경우 등

3) 납부자 착오 : 납부지 착오, 정상 납부 금액 초과 등 납부자가 잘못 납부한 경우 등

4) 기타 : 부과 이후 취소, 감면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23. 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2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법규정 미흡

□ 과오납금 환급 규정 미흡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 운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잘 마련되어 있으나,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은 미흡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세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지방세외수입		지방세	
	규정 유무	관련 법령	규정 유무	관련 법령
부과·징수	○	지방회계법 제20조~27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제3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1조~제7조의6	○	지방회계법 제20조~27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제30조 지방세기본법 제1조~제59조
과오납금 반환의무	○	지방회계법 제28조	○	지방회계법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이자 지급	○	지방회계법 제2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	○	지방회계법 제2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환급금 총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7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환급금 총당 사실 통보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령 제5조의1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환급대상자의 환급 청구	○	지방지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	지방지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환급청구자의 환급금 지급 청구	○	지방지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6조	○	지방지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지급계좌의 신고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직권 지급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적용

* 환급금의 총당 :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체납 등 납부 의무가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 현재 지방세외수입만을 관장하는 유일한 법령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에는 과오납금 총당에 관한 일부 규정만 있을 뿐, 환급금 지급 절차, 직권 지급 등 관련 규정이 미흡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 의무]

■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총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총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총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총당)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총당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지방세외수입은 환급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 운영

- 특히,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등 규정 미비는 대상자의 환급 미청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해태를 유발하는 등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국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 상당

○ 반면,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징수뿐만 아니라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직권 지급 등 환급에 관한 별도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

※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외수입과 동일하게 「지방회계법」이 적용됨에도 지방세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별도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상세하게 규정

□ 계좌정보 취득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 유발

-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유선으로 계좌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등 불필요한 민원 야기

[주요 사례]

- 얼마전 ○○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납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32,000원을 환급해 줄테니 통장 사본을 촬영해 공용 휴대전화로 전송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관공서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응하지 않음
(23. 5월 언론보도)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을 환급하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계좌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23. 8~10월 지자체 담당자 진술)

- 또한,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계좌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행정효율 및 신뢰도 측면에서도 부적절

□ 신청주의로만 운영되는 환급 절차로 국민 불편 초래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환급신청이 있어야 환급 가능

※ 직권 지급 등 신청에 의한 환급 이외의 환급 방법은 없음

■ 회계관리 훈령 제2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행정기관 착오 등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 납부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 초래

※ 실태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 중 28.0%가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

- 반면, 지방세의 경우 신청에 의한 환급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직권 지급이 가능하여 지방세외수입 대비 편의성 높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환급 사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법령 체계

- 지방회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은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 사무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법규적용]

■ 훈령 제28조(지방세 등 법규적용) 제2항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로 인해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지방세외수입만을 관장하는 유일한 법령임에도 과오납금 환급 사무에 대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반면, 지방세는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및 반환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각종 조례·규칙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환급 사무에 대해 지방세법 적용 가능

[지방세에 대한 법규적용]

■ 훈령 제28조(지방세 등 법규적용) 제1항

④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시·도 및 시·군·구세 부과징수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IV. 개선 방안

1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관련 규정 마련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지방세외수입 관련 유일한 법령인 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대상인 체납 세외수입 역시 환급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체납 세외수입 환급 관련 규정을 우선 마련

□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 의무 통지 규정 마련

- 환급금 발생 사실 미인지로 인한 환급 누락 방지,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규정 마련

※ (참고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규정 등 참조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 환급금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 지급 제도 도입

-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또한, 계좌정보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감소,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 지급계좌 신고 규정 마련

※ (참고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규정 등 참조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2 적용범위 확대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규정 마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마련될 과오납금 환급 관련 사무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외수입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세외수입 징수 외에 과오납금 환급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는 규정 마련 필요

- 지방세외수입 징수 외에 과오납금 환급 관련 사무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 훈령 개정
 - 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령에 과오납금 환급 관련 규정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령 개정 시기에 맞추어 훈령 개정 절차 진행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예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28조(지방세 등 법규적용) ① (생략)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28조(지방세 등 법규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징수 및 반환 ----- ----- ----- -----, 다만, 지방세외수입 환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정책제안] 지방세외수입 관련 일반법 마련 검토

-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납부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 등을 규정하는 일반법이 없어 법률관계 불명확, 국민의 권리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잡한 준용 형식의 법체계가 아닌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일반법 마련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 부 과 제	관련기관 (조치기한)
<p>①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관련 규정 마련</p>	<p>○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 의무 통지 규정 마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개정</p> <p>○ 환급금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 지급 제도 도입</p> <p>○ 환급금 지급계좌 신고 규정 마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개정</p>	<p>행정안전부 (2024.12.31.)</p>
<p>② 적용범위 확대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규정 마련</p>	<p>○ 과오납금 환급 관련 사무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 훈령 개정</p> <p>- 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령 개정 시기에 맞추어 훈령 개정 절차 진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p>	<p>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내)</p>



지방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각의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제65조(상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심의하여 틀림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 명령을 발행하고,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지방세 등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시·도 및 시·군·구세 부과징수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5조(과오납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지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 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 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 결정이 취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2(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에 충당할 환급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환급금부터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충당하고, 각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별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1. 경상적 세외수입

- 가. 재산임대수입
- 나. 사용료수입
- 다. 수수료 수입
- 라. 사업수입
- 마. 징수교부금수입
-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1) 과징금
- 2) 이행강제금
- 3) 부담금[나목 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 4) 변상금
- 5) 과태료
- 6) 환수금
- 7) 범칙금

나. 그 밖의 임시적 세외수입

- 1) 재산매각수입
- 2)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 3) 보조금 반환수입
- 4) 기타수입
- 5) 지난연도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관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특별시세·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관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본입니다.

2023. 12.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